

외국의 PL법제도 운영과 동향②

기술교육처장 정연해



목 차

1. 외국의 전반적 동향

2. 각국의 PL법 동향

2-1. 미국의 PL법

2-2. 유럽의 PL법

2-2-1. 영국의 PL법

2-2-2. 독일의 PL법

2-2-3. 프랑스의 PL법

2-2-4. 이탈리아 PL법

2-2-5. 네델란드의 PL법

2-2-6. 러시아의 PL법

2.3 일본의 PL법

2.4 중국의 PL법

● 제1심 배심판결

손해배상액의 결정은 시민들 중에서 선발된 배심원이 판단하게 되며, 이들은 비전문가로서 법률을 심리함으로써 이론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적인 판단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결정도 배심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손해배상금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원고측에 매우 유리한 재판제도이다. 게다가 민사소송에 있어 각 당사자는 서로 상대방의 수중에 있는 소송 관련 각종 정보의 개시, 이른바 디스커버리(Discovery)를 요구할 권리가 법률로서 보장되어 있다. 제조물 책임 소송에 있어 우선 이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질문서, 문서제출요구 및 디포지션(증언녹취 : Deposition) 등의 8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원고는 문제의 제조물의 결함 등을 입증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여 기업보다는 소비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 소비자 권리의식 고양과 소송선호의 국민성
제조물책임 법리의 생성과 발전의 배경에는 소비자 운동에 의하여 출발된 피해자의 권리의식의 고양에 기인하였다. 제품사고에 대한 피해자 의식이 높지 않는 국가에서는 제조물책임을 주장해서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 자체를 생각지도 못한 것을 미국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인정하여 제조물 책임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또한 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제기를 받는 것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그다지 저항감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적인 피해구제제도의 미비

자동차사고, 노동재해, 의료사고 등에 있어서 미국은 유럽이나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자동차 의무보험, 노동재해보험 의료보험 등의 각종제도가 제대로 완비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는 사고 발생 시 당해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고액의 배상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판례가 발전시킨 엄격책임의 법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사회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다. 1960년 이후 제조물책임 소송의 급증과 더불어 손해배상액의 고액화로 인한 보험료 급등 등의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번져 나갔다. 즉,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제조물책임 위기와 1980년대부터는 제조물 책임 보험을 주로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위기가 미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보호 균형을 유지하고 미국 산업의 국제 경쟁력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종래의 엄격책임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즉 제조업자에게 너무 엄격한 판결이 빈발하고 고액의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사태를 겪디지 못하고 손해보험사가 종합배상책임보험의

인수를 사절하기도 하고 손해의 분산기능이 불가능하게 되며 극단적인 경우 제조업자가 업무를 중지해야만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이다.

1986년 TIME誌가 “미국 국민 여러분, 당신의 보험은 취소되었습니다”라는 표지리스토리를 신체되는 위기사태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를 ‘배상책임보험의 위기’라고 하며 그 원인 조사 및 해결을 위하여 행정부에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보고서에는 지나친 법의 판단으로 사건이 부풀려지는 사례가 소개되어 있었다.

그 예로서, 오브라이언 사건은 다른 집의 정원으로 불법 침입한 것으로 여겨진 원고가 합성수지 제품의 Pool에 뛰어들었다가 중상을 입은 사건이었다. 제조업자는 “뛰어들지 말라”는 경고표시를 측면에 부착하였으나, 원고는 인접한 2.4m 높이의 차고에서 뛰어 든 것으로 생각되며, 측면의 경고표지판은 보이지 않았다는 원고 측 변론이 인정되어 승소하였다.

빅비(Bigvee vs. Pacific Tel. Co : 캘리포니아 최고재판소, 1983)는 가해자가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화부스를 들이받아 전화를 걸던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경우로서 그 피해자는 전화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최고재판소는 술에 취한 운전자의 과실행위는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고 오히려 전화부스의 설계, 설치, 고정 및 유지를 담당한 전화회사(피고)에 책임이 있다고 하여 원고측 승소를 인정하였다.

이 두 가지 사건은 미국의 수많은 이상한 PL 판결의 대표적인 예로서 재력이 있는 피고나 손해보험사를 노리는 실체적으로 손해배상금을 획득할 수 있는 쪽으로 손해배상을 부담시킨 판결이라고 미국에서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만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피고측에 중대한 악의가 있다고 간주될 때, 징벌적 의미로 통상의 손

손해배상금 위에 더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으로 최근의 PL소송에서 너무 쉽게 인정되고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 제조기업에 있어서는 매우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다. 문제는 위자료와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산출근거 없이 배심원들에서 결정된다는 것이며 이것이 미국에서의 손해배상금이 높아지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연방 정부와 주정부 차원에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개혁작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도 계속하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보호에 기여해왔던 엄격책임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연대책임의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변호사 보수의 제한 등과 같은 고액배상을 유발하는 사항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연방정부의 개선작업

연방정부의 경쟁력위원회에서는 1991년 8월 기업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제조물책임 소송을 포함한 민사소송이 미국의 경쟁력을 빼앗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로 제조물책임에 관한 소송 제도의 개선을 주안으로 하는 50개 항목이나 되는 “민사재판 제도 개혁 제안”을 공표 하였다. 그 주요 내용으로 징벌적배상금의 상한 설정, 패소자 측의 소송비용 전액부담 원칙의 제한, 공판전의 증거제시 요구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는데, 무과실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통일 제조물책임 모델법(MUPLA : The Model Uniform Product Liability Act)”의 제정을 들수 있으며, 다른 하나로는 MUPLA에 의한 제조물책임 원칙의 통일에 실패한 것을 계기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제조물책임법을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다.

MUPLA의 입법취지는 제조물책임 보험료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주의 제조물책임법

의 통일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소비자와 제조자 간의 공평한 균형을 도모하는데 있었으나, 이는 각 주에서 관련법을 제정하는 데 있어 참고로 하는 ‘모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또한 MUPLA는 산업계와 소비자 사이에 첨예한 의견대립과 이들간의 합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극히 일부 소수의 주에서만 일부 조항만을 채택하는 정도로 그칠 것으로 써, 결국 이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 두 번째 대안으로서 연방의회에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아직까지는 연방의회에 제안된 일련의 연방 제조물책임 법안은 MUPLA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연방입법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며 내용적으로도 MUPLA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여 아직은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들 법안 대부분이 현행법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계속해서 수정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최근의 PL법 개정방향을 살펴보면 PL 위기의 발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6년 들어 상식제조물책임법 (Common Sense Product Liability and Legal Reform Act fo 1995 : H.R.956)안이 1996년 의회를 통과하였으나 클린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었는데, 이 법안에서는 현재 미국의 제조물책임과 관련된 문제점 및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 지나치게 소송이 많다

사법체계는 복잡하고 소송진행은 완만하며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매우 비싼 소송비용은 국가 경제에 불필요하게 손해를 입하고 있다. 나아가 지나친 사법체계의 비용은 미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는 고용효과를 감쇄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있어 생산 자금을 감소시킨다.

- ▶ 지나치고 예측불가능하며 종종 변덕스런 손해배상과 불공평한 책임분담은 직접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비용을 증가시키고 상품과 서비스의 효용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 ▶ 제조물책임 소송과 손해배상 그리고 책임분담을 다루는 판결들은 일관성이 없어 주내 혹은 주간에 복잡하고 모순된 그리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공평하지 못한 불확실성과 부담을 주어 왔다.
- ▶ 불확실한 손해배상금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불공평하고 제조사나 소비자 모두가 어느 정도의 신뢰감과 적정한 비용으로 해야하는지 혼란스럽게 함으로서 높은 책임보험료를 더하게 되었다.
- ▶ 사법체계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된 국가적인 문제들의 범위 때문에 각 주에서는 그러한 무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게 하는 법률을 만드는데 불가능하게 한다.

미국은 연방차원에서의 제조물책임법 개선작업과 병행하여 각 주에서도 법 개정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제조물책임은 기본적으로 주법으로 규정하여야 할 분야이며 연방정부의 관할사항은 아니다. 따라서 주 차원에서는 제2차 보험위기가 있은 다음 1986년 이후 45개 주에서 제조물책임법을 포함한 불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진행하여 왔으며

물론 주마다 그 내용은 다르지만 그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비경제적 손해배상액의 상한선 설정, 배상금 중복청구의 제한, 변호사 성공보수제도의 제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제한, 근거가 빈약한 소송의 제한, 연대책임법리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2.2 유럽의 PL법

유럽에서는 1960년대 초반 구서독과 영국에서 대량 피해자를 내었던 ‘사리드마이드 사건’과 1973년에 발생한 터키 항공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1970년대 들어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적인 PL법을 제정하기로 하고 입법검토를 시작하였다. 이후 영국에 EU에 가입한 후, 그 검토가 더한층 진전되기 시작하였고, 드디어 1985년 ‘PL에 관한 EU지침’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 EU지침은 전문에서 “제조자측의 무과실 책임은 전문적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현대에 최신 기술로 만들어낸 생산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미국 PL법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과실책임에 대신하여 결합책임의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제조물책임에 관한 EU 각국의 실태를 보면, 성문법 국가이면서 판례에 의하여 그 책임을 엄격하게 부과하는 프랑스가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과실책임 원칙을 유지하고 있고 독일은 과실책임 원칙을 채용하고 있으면서도 입증책임으로 전환하여 피해자 구제를 기하는 등 나라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EU 가맹국간의 차이는 제조업자의 경쟁조건에서 격차를 낳게 되었고 결국 공동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물적 유통을 저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되었다. 결국 EU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동시에 공동체 시장의 경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적인 PL법의 실시를 단행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초로서 가장 현대적인 사상인 결합책임을 채용했다고 할 수 있다.

EU에서는 1985년 7월 이사회에서 이 지침을 채택하였고 1988년 7월까지 가맹국간의 입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기한 내에는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3개국만이 입법화하는데 그쳤다. 그 후 각 국에서 입법화가 잇달아 현재는 12개국 모두가 입법화를 끝마쳤다.

EU지침에서는 각 국 모두 결합책임을 기초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도록 지시하였고 지침 작성 시에 각 국간의 의견이 조정되지 못했던 3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

다.

각 국에서의 선택 사항의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 ▶ 미가공 농산물과 수렵물에 대한 적용 여부인데, 현재 룩셈부르크에서만 적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각 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 ▶ ‘개발위험의 항변’의 채택 여부이다. ‘개발위험’이란 그 제품을 유통시키는 시점에서의 과학기술수준으로 그 제품의 결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던 위험을 말한다.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주요 국가에서는 제조자가 제품을 유통시킬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판명할 수 없었다고 입증하기만 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 동일한 결합상품에 기인하는 인신 피해에 대한 책임 한도액의 설정이다. 단, 이를 규정하는 나라는 7천만 EURO 이상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상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지침 발효 10년 후에 시행상황을 보아가면 재검토하기로 하였고 그 지침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무과실책임의 원칙

조자는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과실의 유무와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한다. 제조자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이를 불문한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채택함으로써 제조자의 책임이 강화되었다. 무과실책임을 채택한 이유에 대해서 지침 전문에서는 “특히 전문적 기술이 향상되고 있는 현대에 있어서 최신기술에 의한 생산에 내재하는 위험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 제조물의 범위

전기 및 공업적으로 생산된 모든 동상은 적용 대상이 된다. 그 동산이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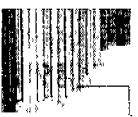
에 부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차 농산물(축산물, 해산물 포함) 및 수렵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제2조에서는 ‘제1차 농산물이란 제1차 가공을 한 제품을 제외한 농산물, 축산물 및 해산물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지침 전문에서는 농업 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당해 제품에 결함을 일으킬만한 공업적 성질을 가지는 가공이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것을 배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 생산물과 수렵물에 대해 공업적 성질의 가공을 하게되면 적용대상이 된다. 다만 각 가맹국은 국내법으로 제1차 농산물 및 수렵물을 적용대상에 포함시켜 이에 대해서도 무과실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 책임주체인 제조자의 범위

“완성품의 제조자”,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표 기타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는 모두 제조자에 해당한다(제3조 제1항). 완성품의 제조자는 그 제조자는 그 제조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책임을 진다. 구성부품 또는 원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완성품에 결함이 발생하고 그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완성품의 제조자는 구성부품의 제조자 또는 원재료의 제조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EU지역 내에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하는 자”도 제조자로 간주된다(동조 제2항). 수입업자는 ‘업으로써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경우에만 제조자로서 간주된다. 따라서 개인적 필요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개인적 성격이든 상업적 성격이든 불문함)는 제조자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예컨데, 항공회사가 자기의 영업, 즉 항공사업을 위해 비행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조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는 피해자가 EU지역 외의 외국인 제조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방지하기 위함이



다. 수입업자를 제조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수입업자가 EU국가 외의 외국인으로부터 값싼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업자 간에 경쟁관계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한가지 이유이다.

EU지역 내의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하는 자는 제외한다. 따라서 이 경우 피해자는 다른 회원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소송은 1982년 민사판할권 및 판결권의 적용을 받으므로 원고는 다른 회원국의 제조자를 상대로 자기 나라의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피고 나라의 법원에서 판결을 집행할 수 있다.

제조물의 제조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수입품에 있어서 그 제조자는 알 수 있으나 수입한 자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자로 간주한다(동조 제3항). 이 규정은 익명의 제조물을 사용함으로서 입는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 입증책임

피해자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한다. EU지침 제4조에는 “피해자는 손해, 결함 및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인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EU지침 제7조에서 제조자가 다음 사항을 입증한 경우에는 지침에서 규정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사항 중(b)호에서 “여러 상황을 참작할 때 손해를 야기한 결함이 제조자에 의해 유통된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결함이 사후에 발생하였다 고 하는 개연성이 높은 경우”이다. 이것은 피해자가 결함, 손해 및 인과관계를 입증한 경우에는 결함은 제조물이 유통과정에 둔 시점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무과실책임을 선택한 것과 관련하여 제조자

와 소비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고전적인 증명책임의 분배를 채용하였다. 그러나 표현증명 또는 사실추정 원칙에 의해 원고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것은 각 가맹국의 법원의 운용과 관련된 것이며 본 조는 그것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다.

● 연대책임의 원칙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2인 또는 그 이상의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제5조). 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 결합의 판단기준

제조물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제조물의 사용,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 등을 포함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이 당연히 기대하는 안전성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제6조 제1항). 다만 나중에 보다 우수한 제품이 유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물이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동조 제2항).

유통된 시기는 결함유부의 판단기준시점이 된다. 완성품의 경우 제조자가 판매를 위하여 자유의사에 의하여 제조물을 유통업자에게 보낸 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부품인 경우에는 완성품 제조업자에게 납품된 시점을, 원재료인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납품된 시점을 말한다.

지상에서 인간최대의 행복은 인격이다.

• 피테(1749~1832)

다음호에 계속됩니다